

가입 · 탈퇴규정

제정 2019. 07. 31.

개정 2021. 12.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약 제10조제3항에 따른 구종목단체의 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본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본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구종목단체가 규약에서 정한 회원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입신청서류) ①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구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4. 단체장의 신원진술서(별지 제2호 서식)
5.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
6.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7.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8. 선수 및 팀(스포츠클럽 포함) 등록 현황
9. 군·구지회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
10.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1.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2.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
 13. 해당 단체의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에 관한 참고자료
- ② 제1항 제13호의 참고자료는 올림픽종목 및 아시아경기대회종목에 한정한다.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구종목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인천광역시동구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인천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조직되어 있을 것
 5. 3개 이상의 클럽으로 조직되어 있을 것
 6. 구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2회 이상일 것 (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는 경기대회 및 생활체육대회를 각각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단, 경기대회와 생활체육대회가 통합된 성격의 대회를 개최한 경우 경기대회 1회, 생활체육대회 1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삭제 2021.12.24.>
 7. 제5호의 군·구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는 경기대회 및 생활체육대회를 각각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단, 경기대회와 생활체육대회가 통합된 성격의 대회를 개최한 경우 경기대회 1회, 생활체육대회 1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삭제 2021.12.24.>
 8.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9.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10. 본회의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종목단체의 정관(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개정 2021.12.24.>
- ② 올림픽종목은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종목단체가 3분의 1이상 조직되어 다만, 국제경기연맹이 1개인 종목을 분리하여 회원단체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며,

국제경기연맹이 각각 존재하더라도 국내의 저변이 매우 취약한 종목단체는 유사 종목단체와 통합하여야 한다. 올림픽종목에 대하여는 종목단체 조직 수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2021.12.24.>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구종목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인천광역시동구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인천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조직되어 있을 것
 5. 3개 이상의 종목단체가 조직되어 있을 것 <삭제 2021.12.24.>
 6. 구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2회 이상일 것 (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는 경기대회 및 생활체육대회를 각각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단, 경기대회와 생활체육대회가 통합된 성격의 대회를 개최한 경우 경기대회 1회, 생활체육대회 1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삭제 2021.12.24.>
 7. 제5호의 군·구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경기단체와 종목별 연합회가 통합한 단체는 경기대회 및 생활체육대회를 각각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단, 경기대회와 생활체육대회가 통합된 성격의 대회를 개최한 경우 경기대회 1회, 생활체육대회 1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삭제 2021.12.24.>
 8.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로부터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및 아시아경기연맹(Asian Federation)이 승인을 받은 종목일 것(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9.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10. 본회의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종목단체의 정관(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 ② 올림픽종목은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종목단체가 4분의 1이상 조직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회는 올림픽종목의 국제경기연맹이 1개인 종목을 분리하여 회원단체로 가입하게 할 수 없으며, 국제경기연맹이 각각 존재하더라도 국내의 저변이 매우 취약한 종목단체는 유사 종목단체와 통합하여야 한다. <삭제 2021.12.24.>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인천광역시동구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인천광역시 회원종목단체로 조직되어 있을 것
5. 3개 이상의 종목단체가 조직되어 있을 것 <삭제 2021.12.24.>
6. 시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는 경기대회 및 생활체육대회를 각각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단, 경기대회와 생활체육대회가 통합된 성격의 대회를 개최한 경우 경기대회 1회, 생활체육대회 1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삭제 2021.12.24.>
7. 제5호의 군·구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는 경기대회 및 생활체육대회를 각각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단, 경기대회와 생활체육대회가 통합된 성격의 대회를 개최한 경우 경기대회 1회, 생활체육대회 1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삭제 2021.12.24.>
8.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9. 본회의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종목단체의 정관(규약)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절차)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규약 제10조에 따른다.

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 종목은 준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부터 만 3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단체 승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회는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심의 요청 또한 같다.

제8조(결격단체 지정) ① 본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을 심의하여 해당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는 결격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결격단체는 1년간의 가입요건 충족 유예기간을 두며 유예기간 중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회원단체의 자격을 회복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9조에 의거 제명한다. <개정 2021.12.24.>

② 결격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본회의 사업 참여와 예산지원의 제한을 받는다.

③ 본회는 등급심의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탈퇴요청 및 제명) ① 구종목단체가 규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본회는 해당 단체를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본회 규약 제9조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본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시킨다.

③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종목단체에 대하여는 규약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구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2. 구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본회 규약,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구종목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구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본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구종목단체인 경우

④ 구종목단체가 해산한 경우 본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탈퇴신청) 회원단체가 본회 규약 제10조 제2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원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부 칙 <제2019-2호, 2019.0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0호,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소속(팀),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주택, 사무실), Email, 학력사항, 경력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단체가입, 본인확인, 선수(임원)등록,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 각종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선수(임원)등록, 대회출전, 증명서발급에 이용: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소속(팀),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주택, 사무실), Email, 학력사항, 경력사항 등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임기만료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시 인천광역시체육회는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단체가입, 본인확인, 선수(임원)등록,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 증명서 발급 등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출 후 임기만료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신상정보
민감정보 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단체가입, 본인확인, 선수(임원)등록,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 증명서 발급 등
민감정보 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 임기만료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동 의 자

이 름 (인)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장 귀하